

영등포구의회
제13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5. 21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■ 개정내용

-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~제12조)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(안 제1조, 제3조)
-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□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□을□창업 2년 이내의 중소.벤처기업□으로 입주자격 변경(안 제4조)
-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공동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입주자 이외의 자에게는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(안 제7조)

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7. 5. 11일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가 제144조로, 2007. 4. 11일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0조가 제47조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내용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창업1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업2년 이내의 중소.벤처기업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시설.장비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.
-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.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5. 21.

보 고 자 : 김 병 욱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- 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47조(업무기준의 고시)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